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확보를 위한 비공개 대화 녹음 허용 규정 도입〉

■ 김예지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351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의견	3
-----------------	---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351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9인
- (2) 제 안 일 : 2025. 11. 18.
- (3) 회 부 일 : 2025. 11.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의 대화 비밀 침해를 금지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학대의 증거를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 등 제3자를 통해 수집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척된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지 못하고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과거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 대한 학대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보호자 등 제3자에 의한 비밀녹음으로 그 행위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그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법리가 수사 실무나 법원의 하급심 판결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도 입법이나 판례법리를 통하여 학대행위 등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보호자 등의 비밀녹음의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이러한 법리의 채택 여부가 법원에서 심급별로 갈리거나 대법원이 일부 학대행위 영역에서 보수적인 해석을 내놓는 등 수사, 재판상 혼란이 커지고 있어, 입법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고하려는 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 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재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서도 구체적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신설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② (생략) <u><신설></u>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u>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학대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있다.</u>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적·기계적 수단을 통해 청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제3조, 제14조),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한 우편물·전기통신 내용 등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제4조).

- 다만, 일부 우편물 개봉, 통관 검사, 수용자 관리 등 법률에 근거한 일부 예외적 상황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지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 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 이러한 규정 체계에 따르면 제3자가 장애인 또는 아동 등에 대한 학대 의심 상황에서 비밀녹음을 하더라도 현행법상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실제 법원에서는 사건별·심급별로 판단이 엇갈리고 있음.

일부 하급심에서는 정당행위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다른 재판부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엄격히 배척하는 등 결론이 일관되지 않는 상황임.

- 정서적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장치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사건에서 2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엄격히 해석하여 이를 위법한 비밀녹음으로 보았고, 파기환송 후 최종적으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음.¹⁾

1) 또한, 위 사례와 유사한 최근 논란이 있었던 유명 만화가의 장애인 자녀 특수교사 학대 사건의 경우, 1심에서는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부정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음.

<동일 사건(학대 의심 상황 비밀녹음)에 대한 심급별 법원 판단 비교>

구분	법원·선고일자·사건번호	법원 판단 요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3. 13. 선고 2018고단2633 판결	피해아동 부모가 작성한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해 별도 판단을 하지 않음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노424 판결	녹음된 교실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능력 인정
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피해아동 가방에 장치를 넣어 녹음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증거능력 부정

자료: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검색 후 정리(<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

□ 개정안은 이러한 법체계와 판례의 불일치로 인해 장애인학대 피해자 보호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장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복되어 온 증거능력 논란을 입법적으로 정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미국에서는 ‘부모의 대리 동의 독트린’(Parental Vicarious Consent Doctrine) 즉, 녹음이 자녀의 복지 보호(protect the welfare of the child)에 필요하다고 믿는 선의(good faith)에 기초한 판단이 있고, 그 판단에 객관적·합리적 근거(objectively reasonable basis)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통화 녹음에 동의할 수 있다는 법리가 판례²⁾를 통해 형성되어 있음.³⁾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첫째, 개정안에 따라 녹음을 허용할 경우 민감한 돌봄·교육·의료 현장의 대화까지 녹음 대상이 되어 제3자의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수집·제출될 수 있고,

교사·치료사·돌봄종사자 등이 분쟁 가능성을 우려해 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이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주저하게 되는 등 사회복지 현장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 및 논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이 명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이라는 문언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2) Pollock v. Pollock, 154 F.3d 601 (6th Cir. 1998).

https://archive.crin.org/en/library/legal-database/pollock-v-pollock.html?utm_source=chatgpt.com(최종검색일 2025.11.20.)

3) Daniel R. Dinger, Should Parents Be Allowed to Record a Child's Telephone Conversations When They Believe the Child Is in Danger?: An Examination of the Federal Wiretap Statute and the Doctrine of Vicarious Consent in the Context of a Criminal Prosecution, 28 SEATTLE U. L. REV. 955 (2005).

4) 이와 관련,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양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7045호), ‘의심되는 경우’(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0347호,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4125호)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신고 요건을 전제로 하면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실행되고 있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녹음 또는 청취를 허용하고 있어 두 규정의 적용 단계가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

즉, 현행법상 신고는 사건을 이미 알게 된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음 또는 청취는 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의심 단계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셋째, 녹음 또는 청취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로 한정한 개정안의 규정은 현행 신고 대상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신고 대상을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녹음 또는 청취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로 제한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위해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노인복지법」의 경우도 학대 정황에서의 증거 확보를 위해 보호자 등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으며,

이를 전제로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증거 수집을 예외 사유로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함께 발의된 상황임.

<동일 취지의 법률안 발의 현황>

의안번호 (대표발의 의원)	법률안	주요내용
제2214349호 (김예지의원)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및 제14조제1항⁵⁾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제2214350호 (김예지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가 실행되거나 시행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제2214353호 (김예지의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가 실행되거나 시행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증거 수집을 위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있는 규정 신설

5)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은폐성, 의사표현 능력 제한으로 자기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의 녹음 등을 허용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함.
- 다만, 「대한민국헌법」 제18조는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녹음으로 사생활 침해나 갈등 조장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관련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선행이 필요함.

나. 교육부

- 장애학생의 존엄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학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동감함.
- 다만, 교육활동 중 제3자의 녹음 등을 인정하는 개정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을 더욱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 교육공동체의 신뢰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중한 입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관계 단체

단체명	의견
중증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중증장애인의 학대 상황에서 증거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행 신고요건 ‘알게된 때’와 녹음요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의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혼선 예상 ‘중증장애인’ 요건은 사후적으로만 행정자료가 확인이 가능함에 따라, 신고자가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발생 - 대상자 범위를 좁게 설정하기보다는, 학대 정황에 대한 합리적 의심·긴급성·필요성 등 녹음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필요
한국교원단체연합	- 제3자의 감청 허용은 사생활의 비밀, 통신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감시·불신의 장으로 전락시킬 우려 - 헌법 제10조·제17조·제18조를 정면으로 침해하며, 교사의 수업시간 중 발언을 공개되지 않은 대화로 본 대법원 판결(2020도1538)과도 배치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정당한 목적’ 등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 - 아동학대 예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사적 감청 합법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사적 감청 합법화의 위험

단체명	의견
	선별적 편집 등 오남용 우려가 있고, 교육·돌봄 현장을 기피 대상으로 만들어 오히려 보호가 필요한 학생 등이 배제될 우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 확보, 학대 피해의 조기 발견과 가해자 처벌 가능성 제고,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증거능력 판단의 일관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현행 제도의 중대한 공백을 보완하는 입법이라 판단
지체장애인협회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자가 녹음 등 전자적·기계적 수단을 활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수단을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문의처
02)6788-5502